

붙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기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개정 신규대비표(별표5)

변경 前		변경 後
[별표 5]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 (제25조제3항 관련)		[별표 5] “ 삭제 ”
항 목	사 용 방 법	
	카드사용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	
인건비	○ 기관 내부, 외부 연구원 인건비	
학생인건비	○ 학생인건비	
연구장비·재료비	○ 기기·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○ 연구시설의 설치·구입·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부대경비 ○ 시약·재료·구입비 ○ 시제품·시작품·파일럿플랜트 제작경비 ○ 외국에서 직수입하는 기자재 구입비(국내 수입대행사 경유 시 제외) ○ 외·내부 컴퓨터 사용료 및 전산처리·관리비 ○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낙찰가가 공개되는 R&D 물품 구입비	
연구활동비	○ 인쇄비, 복사비, 인화비, 슬라이드 제작비 ○ 도서 등 문헌구입비 ○ 세미나 개최비 ○ 세부과제 조정·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해당 분 ○ 국외출장비(관련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) ○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, ○ 해당과제와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,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○ 회의수당 및 국내외 전문가활용비 ○ 국내외 교육훈련비, 기술정보수집비,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○ 원고료, 통역료, 번역료, 송기료 및 구독료 등 ○ 기술도입비, 특허정보조사비, 정보DB사용료,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○ 세부과제 조정·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이외분 ○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낙찰가가 공개되는 기술용역비 ○ 외부시험분석료 및 내부시험분석료	
연구과제추진비	○ 회의비, 식대 ○ 사무용품비,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·비품의 구입·유지 비용 등 ○ 국내출장비(숙박, 교통, 식대 포함) 및 시내교통비	
연구수당	○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	
위탁연구개발비	○ 위탁연구기관의 해당계좌에 이체 ○ 위탁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 과제에 준하여 집행함	

※ [별표 5]가 삭제됨에 따라 연구장비·재료비 등 직접비 전체를 계좌이체 및 연구비카드로 집행이 가능하게 되었음